보조금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9년 환경산림자원국 보조금감사 –

2019.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훈계	경징계
계		6건	0	6	0	0	0	0			0	0
1	□□과	□□ 운영사업 정산 부적정		1								
2	□□과	2017년 □□ 보조금 정산 부적정		1								
3	□□과	2018년 □□ 지원사업 계약 부적정		1								
4	□□과	□□ 보조사업 계약 부적정		1								
5	□□과	□□ 원천징수 미이행 등 부적정		1								
6	□□과	보조금 변경 승인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운영사업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과

내 용

경상북도 □□과는 〔표1〕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 운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비		
			계	도비	자부담
2016년	□□과	□□회	30,000	30,000	0
2017년			27,000	27,000	0
2018년			23,600	20,000	3,60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1.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지방재정법」(2015. 11. 14.) 제3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같은 법」제32조의4 제1항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6. 5. 22.,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6. 2. 20.,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정산 시에는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과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표2〕와 같이 사전답사 관련 영수증, 교통비 등 아무런 증빙없이 사전답사비로 4,350,000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었는데도 사업비 집행잔액 667,440원을 약품, 소모품비, 사무용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전답사비 외에 사전답사 중식비 195,900원을 중복하여 지출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213,340원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거나 용도 외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다.[1)]

1)〔표2〕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은〔별표〕참조

〔표2〕 □□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 도	사업내용	건 수	금 액	부적정현황
2016년	사전답사비	25건	3,600,000	증빙없음
	약품,소모품비	2건	367,440	행사종료 후 집행
2017년	사전답사비	4건	450,000	증빙없음
	사전답사 중식비	8건	195,900	사전답사비와 중복
	사무용품	1건	300,000	행사종료 후 집행
2018년	사전답사비	3건	300,000	증빙없음
소계	사전답사비	32건	4,350,000	
소계	사전답사 중식비	8건	195,900	
소계	약품,소모품,사무용품	3건	667,440	
총계		43건	5,213,34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연합회가 제출한 부실한 증빙자료에 대해 이를 조사하거나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처리하였다.

2. 참가비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5. 1. 1., 행정자치부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6. 2. 20.,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8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6년 ~ 2017년 □□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의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반환 및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서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받도록 되어 있다.[2)]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사)□□회는 □□을 운영하면서 참가비를 참가자로부터 받았는데도 참가비 현황을 포함하지 않고 □□과에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 부서는 이번 감사기간(2019. 2. 26. ~ 3. 12.)에 〔표3〕과 같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276,560원의 참가비가 발생한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

〔표3〕 참가비 납부금액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참가비 납부금액(A)	참가비 집행금액(B)	차액(A-B)
2016년	4,350,000	1,514,300	2,835,700
2017년	2,926,560	298,060	2,628,500
계	7,276,560	1,812,360	5,464,200

주 : 참가비는 간식비, 기념품비 등으로 집행하였음(1명/참가비 10,000원)
자료 : 경상북도 □□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부서의 보조사업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사)□□회는「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016년 ~ 2018년 영남옛길 답사프로그램 운영사업 증빙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관련행사	지출일시	지출내용	금액	수령인(채주)	부적정 내용
2016.5.28.	2016.5.23.	사전답사비	150,000	오정래	증빙없음

2) 2016년 □□과-7620(2016.5.3.), 2017년 □□과-6844(2017.3.29.), 2018년에는 참가비를 정산함

관련행사	지출일시	지출내용	금액	수령인(채주)	부적정 내용
고령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5.23.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5.23.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6.25. 영주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6.27.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6.27.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6.27.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7.16. 안동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7.19.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7.19.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7.19.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7.30. 울진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7.19.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7.19.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7.19.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8.20. 경주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8.25.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8.25.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8.25.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9.24. 문경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9.26.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9.26.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9.26.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10.15. 청도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10.15.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6.10.15.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10.15.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6.10.15.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6.10.23. 상주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6.10.25.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10.25.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6.10.25.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소모품비 구입	2016.10.27.	소모품비 구입	154,440	□□□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2016.11.01.	약품구입	213,000	□□□약국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2017.4.29. 고령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4.25.	간식비	25,900	□□□마트	사전답사비 간식비
2017.5.27. 안동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5.15.	중식비	21,000	□□□	사전답사 중식비
2017.6.24. 영주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6.5.	중식비	21,000	□□□묵집	사전답사 중식비
2017.7.22. 울진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6.28.	중식비	21,000	□□□식당	사전답사 중식비
2017.8.12. 경주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7.20.	중식비	28,000	교동쌈밥	사전답사 중식비
	2017.8.12.	사전답사비	150,000	□□□	증빙없음
	2017.8.12.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7.8.12.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7.8.12.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7.8.26. 문경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8.3.	중식비	21,000	□□□가든	사전답사 중식비
2017.9.23.	2017.8.30.	중식비	21,000	□□마을	사전답사 중식비

관련행사	지출일시	지출내용	금액	수령인(채주)	부적정 내용
상주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10.21. 청도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7.10.15.	중식비	37,000	□□□	사전답사 중식비
소모품비 구입	2017.10.25.	사무용품비	300,000	□□□문구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2018.7.28. 울진 금강송숲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8.7.30.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8.9.15. 안동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8.9.19.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2018.10.27. 청도옛길답사 (참석인원 45명)	2018.10.31.	사전답사비	100,000	□□□	증빙없음
계	43건		5,213,34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7년 □□□ 아카데미 보조금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과

내 용

경상북도 □□□과는 〔표1〕 과 같이 2017년 □□□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2017년 □□□ 아카데미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정산확정	사 업 비		
				계	도비	자부담
2017	(사)□□□	2017. 7. 20. ~ 12. 27.	2018.3.19.	46,200	32,000	14,20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1. 채주불일치 및 회계연도 내 집행 미준수

「지방재정법」(2017. 3. 30.) 제32조의6 제1항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6. 5. 22.,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실적보고 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영수증 등 기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를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은 일치되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이 지급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7. 2. 23.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는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17. 2. 28. 보조사업자 (사)□□□가 □□□과로 제출한 2017년 □□□ 아카데미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표2〕와 같이 아카데미 진행과 관련하여 대학생 5명의 인건비 320천원과 □□□ 아카데미 4명의 진행강사비 650천원을 채주1명에게 각각 지출하고,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세미나 관련 식비 및 다과비용으로 680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1,650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2〕 채주불일치 및 사업종료 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문서번호	지출일	지출금액	지출내용	부적정내용
2017-45	2017.8.7.	320	대학생 인건비 비용	채주 1명(□□□)에게 5명 비용 집행
2017-64	2017.8.19.	650	강사료	채주 1명(□□□)에게 4명 비용 집행
2017-189	2018.1.2.	150	식비	회계연도 초과
2017-190	2018.1.2.	200	식비	〃
2017-191	2018.1.2.	330	다과비용	〃
계	5건	1,65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사)□□□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정산 확정하였다.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공제

「소득세법」(2017. 1. 20.) 제21조 및 제129조에 제1항에 따르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소득세법 시행령」(2017. 1. 20.) 제87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3)]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6. 5. 2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2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3〕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성명	지출일	지출내용	지출별 금액	총 지급액	미공제 원천세			정당한 지급액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	2017.8.19.	강사료	600,000	1,000,000	44,000	40,000	4,000	960,000
	2017.11.26.	강사료	400,000					
□□□	2017.9.27.	아카데미 진행비	300,000	300,000	13,200	12,000	1,200	288,000
□□□	2017.11.27.	강사료	300,000	300,000	13,200	12,000	1,200	288,000
계	3명		1,600,000	1,600,000	70,400	64,000	6,400	1,536,00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그런데 2017 □□□ 아카데미 보조사업자인 (사)□□□는 김□□, 노□□, 서□□ 3명의 비상근 직원의 강사료, 아카데미 진행비, 보조진행 인건비 등을 지급하

3) 원천세 징수세율 : 총 수당의 4.4%(소득세 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면서 〔표3〕과 같이 소득세 64,000원, 지방소득세 6,400원 등 총 70,40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원천징수 미공제에 대해 아무런 정산검사 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산을 확정하시기 바라며,

② 보조사업에서 집행되는 각종 수당이 관련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납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8년 □□ 지원사업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과

내 용

경상북도 □□과는 2018년 □□ 지원사업을 〔표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1〕 □□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 업 비		
			계	도비	자부담
2018	□□과	□□지원센터	95,000	95,000	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8.) 제25조 제1항 제5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8. 1. 22.,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8. 1. 1.,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과-2629(2018. 3. 9.))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보조사업자는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센터는 제8차 □□ 개최를 위한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경북□□센터 보조사업 관련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약자(대행사업자)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여행사	제8차 □□ 개최를 위한 운영	38,490	2018. 3. 16.~3. 26.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그런데 □□센터에서는 제8차 □□ 개최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지도 않고 1인 견적으로 위〔표2〕의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경북□□센터의 대행사업자 선정 계약에 대해 아무런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보조사업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과

내 용

경상북도 □□과는〔표1〕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업비	사업기간
2015년	□□경북지역본부	200,000	2015. 1월 ~ 2015. 12월
2016년	□□지역본부	110,000	2016. 9월 ~ 2016. 12월

자료 :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자료 재구성

1. 대행 여행사 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 11. 19.)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1.) 제77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1.)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역·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5. 1. 22.,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본부가 □□ 사업의 대행 여행사 선정을 계약할 때 수의 분할계약이 아닌 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에 의해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지역본부에서는 2015년과 2016년 □□ 프로젝트 내에서 단일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도 [표2] 와 같이 시기적으로 여행사 계약을 분할하여 계약을 집행하였으며, □□ 교류사업 4건의 계약 총 금액은 72,416천원, □□ 교류사업 2건의 계약금액은 45,940천원인데도 여행사 계약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일반입찰 및 2인 이상 견적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인 ㈜□□관광 및 □□산학협력단여행사업부와 각각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2015년 ~ 2016년 □□ 여행사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약자 (대행사업자)	계약내용	계약금액	교류일정
2015년	㈜□□관광	①□□기관 방문 비용[4]	22,750	2015.2.2.~2015.2.9.
		②□□ 기념행사 여행비용	11,177	2015.6.25.~2015.7.1.
		③□□ 현지안내인 비용	3,751	〃
		④□□ 초청 연수 비용	34,738	2015.9.8.~2015.9.17.

	계	4건	72,416	
2016년	□□산학협력단여행사업부	①□□ 초청연수 비용	18,900	2016.11.23.~2016.11.27.
		②□□기관 방문 비용	27,040	2016.12.17.~2017.12.23.
	계	2건	45,94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과는 보조사업자가「지방계약법령」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서는 보조사업자가 특정업체를 대행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수의계약 대상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1.)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2014. 11. 19.) 제2항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

〔표3〕 수의계약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자	자격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1	□□	개인	2015. 8. 6.	□□ 방제시책 자료수집조사	9,700
2	(사)□□	비영리법인	2015. 5. 29.	□□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및 자료	19,550

4) □□ 방문(계약금액 22,750,000원) 여행사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행사로부터 임의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자인 ㈜□□관광과 계약을 체결함.

				수집	
계	2건				29,25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그런데 □□본부는 〔표3〕과 같이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사)□□□과 용역사업 2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총 29,250천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제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원천징수 미이행 등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과

내 용

경상북도 □□과는 〔표〕 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 개최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업일시	사 업 비		
				계	도비	자부담
2016	□□과	(사)□□	2016. 12. 9.(금)	7,000	6,000	1,000
2017	〃	〃	2017. 12. 15.(금)	6,400	5,400	1,000
2018	〃	〃	2018. 12. 18.(화)	21,000	20,000	1,00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1. 강사료 원천징수 미공제

「소득세법」(2016. 9. 1.) 제21조 및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소득세법 시행령」(2016. 11. 30., 2018. 10. 23.) 제87조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공문(경상북도 회계과-25903(2018. 12. 18.))에 따르면 2018년 3월까지는 25만원 초과분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은 80%(원천세 세율 4.4%)이며,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16만 6,666원 초과분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은 70%(원천세 세율 6.6%)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6. 5. 2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별표〕와 같이 □□ 발표자 18명의 강사료 및 인건비 등에서 소득세 540천원, 지방소득세 54천원 등 총 594천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도, □□과에서는 □□ 인건비의 원천징수에 대해 시정, 반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지출결의서 미작성

「지방재정법」(2016. 5. 22.) 제3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보조금 지출 시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였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보조금 서류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조금 정산을 확정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가 각종 수당의 원천징수 이행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연도 (일시)	성명	소속	인건비 지급내역	원천징수 미공제액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2016년 (12. 9.) 강사료	□□□	□□□진흥원	450,000	19,800	18,000	1,800
	□□□	□□□대학교	300,000	13,200	12,000	1,200
	□□□	□□□대학교	300,000	13,200	12,000	1,200
	□□□	□□□대학교	300,000	13,200	12,000	1,200
	□□□	□□□대학교	300,000	13,200	12,000	1,200
소계	5명		1,650,000	72,600	66,000	6,600
2017년 (12.15.) 강사료	□□□	□□□대학교	450,000	19,800	18,000	1,800
	□□□	□□□과학원	300,000	13,200	12,000	1,200
	□□□	□□□대학교	300,000	13,200	12,000	1,200
	□□□	□□□	300,000	13,200	12,000	1,200
	□□□	□□□대학교	300,000	13,200	12,000	1,200
	□□□	□□□사무소	300,000	13,200	12,000	1,200
	□□□	□□□영농조합	300,000	13,200	12,000	1,200
소계	7명		2,250,000	99,000	90,000	9,000
2018년 (12.18.) 정책개발 인건비	□□□	□□□대	1,200,000	79,200	72,000	7,200
	□□□	□□□대	1,200,000	79,200	72,000	7,200
	□□□	□□□대	1,200,000	79,200	72,000	7,200
	□□□	□□□대	1,200,000	79,200	72,000	7,200
	□□□	□□□대	1,200,000	79,200	72,000	7,200
	□□□	□□□대	400,000	26,400	24,000	2,400
소계	6명		6,400,000	422,400	384,000	38,400
합계	18명		10,300,000	594,000	540,000	54,00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금 변경 승인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과

내 용

경상북도 □□□과는 보조사업자 (사)□□□경북협회를 선정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표〕와 같이 □□□경연대회와 □□□올림피아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4건		계	도비	자부담
2016년	제4회 □□□올림피아드	21,935	20,000	1,935
2017년	제5회 □□□올림피아드	20,000	18,000	2,000
2016년	제4회 □□□경연대회	23,750	21,000	2,750
2017년	제5회 □□□경연대회	21,856	19,000	2,856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지방재정법」(2015. 11. 14.) 제32조의4 제2항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5. 1. 1.,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경북협회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연대회와 □□□올림피아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표〕와 같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사업의 내용과 소요되는 경비를 변경하였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위 협회에 시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회에서 집행한 보조금을 그대로 정산 확정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자가 부서장의 승인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및 경비를 배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사업 변경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 (B-A)
2016년 제4회 □□□	심사수당	300,000	210,000	△90,000
	진행요원수당	4,330,000	2,574,810	△1,755,190
	지급품비	3,000,000	3,960,000	960,000

올림피아드	체험활동비	2,850,000	3,750,000	900,000
	임대료	1,390,000	1,859,000	469,000
	무대시설	500,000	564,000	64,000
	홍보비	3,500,000	2,101,000	△1,399,000
	우편통신비	200,000	183,960	△16,040
	보험료	500,000	389,000	△111,000
	임차료	100,000	0	0
	출장비	200,000	0	0
	회의비	300,000	413,100	113,100
	행사운영비	330,000	405,130	75,130
	식비	700,000	1,190,000	490,000
	식전공연비	1,800,000	2,400,000	600,000
	계	**20,000,000**	**20,000,000**	**0**
2017년 제5회 □□□ 올림피아드	심사수당	280,000	480,000	200,000
	진행요원수당	2,000,000	2,000,000	0
	지급품비	1,800,000	3,760,000	1,960,000
	체험활동비	3,500,000	2,325,020	△1,174,980
	임대료	1,600,000	544,500	△1,055,500
	무대시설비	500,000	3,400,000	2,900,000
	홍보비	3,000,000	3,234,000	234,000
	우편통신요금	240,000	244,280	4,280
	보험료	500,000	370,000	△130,000
	임차료	200,000	0	0
	임차료(버스)	800,000	550,000	△250,000
	출장비	200,000	50,000	△150,000
	숙박비	400,000	0	0
	회의비	300,000	297,200	2,800
	의료비	500,000	0	0
	행사운영비	460,000	0	0
	식대	1,120,000	245,000	△875,000
	식전행사	600,000	500,000	△100,000
	계	**18,000,000**	**18,000,000**	**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 (B-A)
2016년 제4회 □□□경연대회	강사비	600,000	717,000	117,000
	심사비	2,000,000	900,000	△1,100,000
	행사인건비	1,400,000	2,050,200	650,200
	식비	4,200,000	3,630,000	△570,000

	숙박비	2,000,000	2,079,000	79,000
	체험활동비	2,000,000	217,900	△1,782,100
	인쇄비	3,750,000	1,500,000	△2,250,000
	홍보비	3,000,000	4,710,000	1,710,000
	우편통신비	200,000	0	△200,000
	임차료	1,000,000	1,080,000	80,000
	대여료	320,000	1,243,000	923,000
	기타운영비	530,000	336,400	△193,600
	지급품비	0	1,117,500	1,117,500
	피복비	0	450,000	450,000
	행사비	0	630,000	630,000
	단체보험료	0	339,000	339,000
	계	**21,000,000**	**21,000,000**	**0**
2017년 제5회 □□□경연대회	강사비	200,000	200,000	0
	심사비	1,600,000	1,300,000	△300,000
	행사인건비	1,590,000	1,749,000	159,000
	식비	1,050,000	2,004,000	954,000
	체험활동비	1,500,000	3,350,000	1,850,000
	홍보비	3,000,000	1,424,000	△1,576,000
	우편통신비	200,000	34,680	△165,320
	대여료	2,900,000	2,414,500	△485,500
	방송장비	1,700,000	2,750,000	1,050,000
	기타운영비	0	1,077,000	1,077,000
	진행비	340,000	330,000	△10,000
	부스운영비	3,000,000	1,100,000	△1,900,000
	소모품비	270,000	439,820	169,820
	공연비	300,000	0	0
	운영비	0	300,000	300,000
	단체보험료	350,000	221,000	△129,000
	의료비	500,000	0	△500,000
	소모품비	300,000	0	△300,000
	임차료	200,000	**0**	△200,000
	계	**19,000,000**	**18,994,000**	**△6,00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